



2020년도 충남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최종보고서

2020. 12. 31.

2020년도 충남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최종보고서

'20. 12. 31.

경영기획팀

◆ 우리원의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목표로 2020년도 인권경영 체계 수립 및 단계별 이행추진 결과를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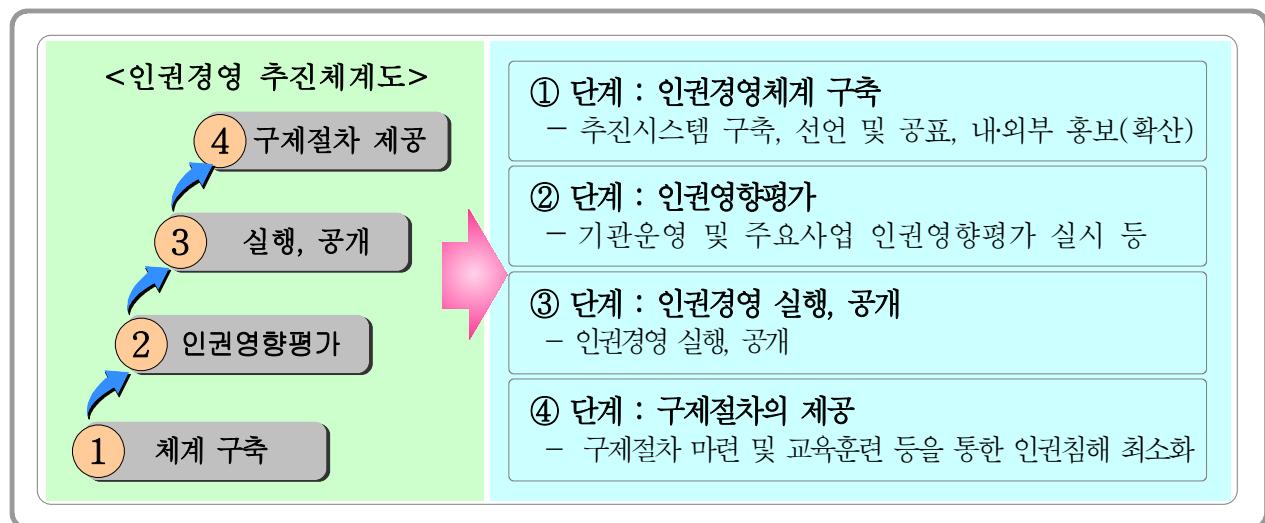
I 인권경영 추진개요

- 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 인권경영
 - 국가인권보호 의무와 기업 인권 존중 책임 실현
 -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
 - 인권정책선언, 인권실천·점검의무 이행,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
-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8.7.」 확정
 -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선정
 -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자발적 인권경영 실천), 인권 영향평가,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자발적 인권 경영 실천 및 제도화(절차 마련)

II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

○ 단계별 추진체계도

- 인권경영 추진체계도(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이행과제

① 단계 - 인권경영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협업부서 역할 지정
 - 전담부서(경영기획팀) : 내부 시스템 정비 및 인권경영 이행·관리
 - 협업부서(사업팀) : 외부 의견수렴 등 인권경영 이행을 외부로 확산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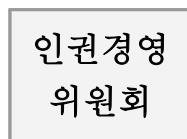
경영기획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추진방향, 과제, 전략수립▶ 인권경영 현장 선언▶ 인권경영 이행지침 마련▶ 기관 및 주요사업 추진 과정의 인권 실태 파악 위한 내·외부평가 실시▶ 임직원 인권교육 실시▶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및 훈련

【협업부서】

사업팀(기업육성, 마케팅, 일자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자 선정▶ 인권 실태 파악 위한 내부 평가 참여▶ 직원 인권교육 수료 등

○ 인권경영 실행 지침 제정(2019. 12. 12. 제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2020. 11. 5. 개최)



- ▶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외부 자문기구 운영
 -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전문적 의견 수렴
 - ▶ 인권경영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등

※ 내부위원(3인) 및 외부 인권증진 관련 분야 전문가(4인)으로 구성

- 내부위원(3인) : 경영전략실장, 인권경영 전담팀장, 노동조합지부장
 - 외부위원(4인) : 교수, 변호사, 노무사, 인권 분야 전문가

○ 인권교육 및 훈련(상시)

- 임직원 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활용
- 담당자 훈련 : 인권 연수 및 인권경영 포럼 참여,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및 제정('20.11.5.)

- 인권경영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 [인권경영 공표]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20.12.14)

- 인권경영 실천 주체 내부 공표
- 공표한 선언문(현장) 홈페이지 게재실시

○ [인권경영 선언] 각 팀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 선언문 확산

- 이해관계자: 임·직원, 노동조합, 지역주민, 고객, 인권전문가 등 경영활동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선포식																										
<p>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인권경영 현장</p> <p>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달성을 이비하고 있다.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현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p> <p>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현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p> <p>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p> <p>하나, 우리는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p> <p>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p> <p>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p> <p>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즐긴다.</p> <p>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p> <p>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p> <p>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12월 14일 제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p>	<p>제작 기관은 월드 시제 허브라는 협회이름은 월드 시제</p> <p>(경유)</p> <p>제목: 충남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소프트 계획(안)</p> <p>기획에 대한 인식과 실행을 예상하고 인권문화로 인권활동을 확장하는 목표로 인권경영을 주제로 기획하고 이를 경영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대내외으로 공표하고자 충남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p> <p>① 행·시·경 충남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선포식</p> <p>② 민족기원 전승회 축제 및 5·18 대회</p> <p>③ 행사·모임</p> <p>④ 원장 기념사</p> <p>⑤ 충남 인권경영 소개</p> <p>⑥ 인권경영 소개판</p> <p>⑦ 주간 경영 노정: 2020. 12. 14. (월) 10:00 충남경제진흥원 252호 강의실</p> <p>참석 대표기관: 대전전기, 대전전기, 계명대학교, 부산 고</p> <p>2020. 12. 16. 충청남도경제진흥원</p> <p>◆ 기관에 대한 인식과 실행 예상 및 인권문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 경제진흥원을 추진하고 기관의 인권경영활동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함.</p> <p>② 행사내용</p> <p>○ (행·사·경) 충남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선포식</p> <p>○ (경·여·인·회) 진흥원 임직원 26명</p> <p>○ (행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 기념사- 경영 활동 소개- 인권경영 소개 <p>③ 진행일정 및 장소</p> <p>○ (일·시) 2020. 12. 14.(월) / 10:00 ~ 10:20</p> <p>○ (장·소) 충남경제진흥원 252호 강의실</p> <p>④ 진행내용</p> <p>○ 원장 축사</p> <p>○ 진흥원 인권경영 소개 및 선포식</p> <p>⑤ 주요일정</p> <table border="1"><thead><tr><th>시 간</th><th>주 소</th><th>주 요 내 용</th><th>장 소</th><th>비 고</th></tr></thead><tbody><tr><td>10:00~10:02</td><td>2'</td><td>• 동장 기념사</td><td>인증장</td><td>평생</td></tr><tr><td>10:02~10:10</td><td>8'</td><td>• 민족 경영 소개 • 충남 경영 소개 • 인권경영 소개</td><td>인증장 인증장 인증장</td><td>평생부</td></tr><tr><td>10:10~10:15</td><td>5'</td><td>• 인권 경영 선포</td><td>인증원</td><td>평생원</td></tr><tr><td>10:15~10:20</td><td>5'</td><td>• 기념촬영</td><td>인증장 인증장</td><td>평생원</td></tr></tbody></table>	시 간	주 소	주 요 내 용	장 소	비 고	10:00~10:02	2'	• 동장 기념사	인증장	평생	10:02~10:10	8'	• 민족 경영 소개 • 충남 경영 소개 • 인권경영 소개	인증장 인증장 인증장	평생부	10:10~10:15	5'	• 인권 경영 선포	인증원	평생원	10:15~10:20	5'	• 기념촬영	인증장 인증장	평생원
시 간	주 소	주 요 내 용	장 소	비 고																						
10:00~10:02	2'	• 동장 기념사	인증장	평생																						
10:02~10:10	8'	• 민족 경영 소개 • 충남 경영 소개 • 인권경영 소개	인증장 인증장 인증장	평생부																						
10:10~10:15	5'	• 인권 경영 선포	인증원	평생원																						
10:15~10:20	5'	• 기념촬영	인증장 인증장	평생원																						

이행과제

② 단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1.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20.12)

-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 인권경영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마련 및 체크리스트 교육
 - 주요사업 인권경영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기관 고유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세부 평가 지표]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항목	지표	단위별과 보유 별로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필증	
1	인권침해 예방 체계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자별					
3	권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장제 노동의 금지					
5	사업안전 보장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고용안전 보호					
합 계						
소 계						
1	인권침해 예방 체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	인권영향평가는 국적별로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충족하는지 평가했다.					
3	인권영향평가는 행정 시 친환경 내·외화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4	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권 영향 발생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5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제작과 함께 인권 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6	인권영향평가는 경기적으로 실시된다.					
소 계						

[기준점수]

100

○ [인권영향평가 체계 담당자] 성명: 경영기획팀장 회 7번

- 평가기간: 2020. 12. 2 ~ 12. 11.

- 지표 담당자 역할

- 인권영향평가 지표 자료 작성 및 관련근거 자료 마련
- 담당자표별 보고서 작성 및 원인 리스크 발굴·보완 추진

○ [기준총점] 인권영향평가 추진

연번	분야	내 용		비고
		지표담당	담당부서	
1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이원부	경영기획팀	
2	고용상의 비자별	홍성숙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이영구/박병명	▲	
4	장제 노동의 금지	홍성숙	▲	
5	사업안전 보장	조자종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권태진	▲	
7	고용안전 보호	이원부	▲	

○ [주요사건] 인권영향평가 추진

연번	분야	내 용		비고
		지표담당	담당부서	
1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정연하	기업육성팀	
2	수단금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이은영	마케팅지원팀	

○ (인권영향평가 지표담당자 구성) 경영기획팀장 외 7명

- 평가기간: 2020. 12. 2 ~ 12. 18.
 - 지표담당자 역할
 - 인권영향평가 지표 자료 작성 및 관련근거 자료 마련
 - 담당지표별 보고서 작성 및 인권 리스크 발굴·보완 추진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2020년도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보고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20.12. 경영기획팀																																		
<p>◇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고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함</p>																																		
I 인권영향평가 개요																																		
<p>○ 관련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인권경영 운영 지침-제27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p>○ 의 의: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작용과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p> <p>○ 평가대상: 기관운영(기관활동전반) 및 주요사업/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p> <p>○ 평가기간: 2020. 12. 2 ~ 12. 18.</p> <p>○ 평가방법: 실무답담부서의 내부 자체평가</p> <p>○ 인권영향평가 지표담당자 구성: 경영기획팀장 외 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담당자 역할 - 인권영향평가 지표 자체 작성 및 관련근거 자료 마련 - 담당지표별 보고서 작성 및 인권 리스크 발굴·보완 추진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p>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p> <p>가. 총평</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인권경영정책체계의 구축</td> <td>83.33</td> </tr> <tr> <td>고용상의 비차별</td> <td>100</td> </tr> <tr> <td>경찰 및 단체교섭업무 자유보장</td> <td>96.87</td> </tr> <tr> <td>강제 노동의 금지</td> <td>94.44</td> </tr> <tr> <td>사람인권 보장</td> <td>93.75</td> </tr> <tr> <td>책임 있는 행정 관리</td> <td>75</td> </tr> <tr> <td>고객·사랑방 보호</td> <td>100</td> </tr> <tr> <td>총점</td> <td>91.91</td> </tr> </tbody> </table> <p>(평가내용)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1.91점으로 고용상의 비차별, 고객·사랑방 보호가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책임 있는 공공망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권고됨</p> <p>나. 지표별 세부평가결과</p> <p>○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 83.33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인권인증 청탁금지</td> <td>91.66</td> </tr> <tr> <td>인권영향평가 정기기록 실시</td> <td>75</td> </tr> <tr> <td>인권경영 체계화를 위한 활동조치</td> <td>100</td> </tr> <tr> <td>인권 경영 성과</td> <td>50</td> </tr> <tr> <td>구체화된 마련</td> <td>100</td> </tr> <tr> <td>총점</td> <td>83.33</td> </tr> </tbody> </table>		분야	점수	인권경영정책체계의 구축	83.33	고용상의 비차별	100	경찰 및 단체교섭업무 자유보장	96.87	강제 노동의 금지	94.44	사람인권 보장	93.75	책임 있는 행정 관리	75	고객·사랑방 보호	100	총점	91.91	분야	점수	인권인증 청탁금지	91.66	인권영향평가 정기기록 실시	75	인권경영 체계화를 위한 활동조치	100	인권 경영 성과	50	구체화된 마련	100	총점	83.33	
분야	점수																																	
인권경영정책체계의 구축	83.33																																	
고용상의 비차별	100																																	
경찰 및 단체교섭업무 자유보장	96.87																																	
강제 노동의 금지	94.44																																	
사람인권 보장	93.75																																	
책임 있는 행정 관리	75																																	
고객·사랑방 보호	100																																	
총점	91.91																																	
분야	점수																																	
인권인증 청탁금지	91.66																																	
인권영향평가 정기기록 실시	75																																	
인권경영 체계화를 위한 활동조치	100																																	
인권 경영 성과	50																																	
구체화된 마련	100																																	
총점	83.33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총평																																		
<table border="1"> <thead> <tr> <th>【결과 그래프】</th> <th>【점수표】</th> </tr> </thead> <tbody> <tr> <td></td> <td>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td> <td>92.3</td> </tr> <tr> <td>주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td> <td>92.3</td> </tr> <tr> <td>총점</td> <td>92.3</td> </tr> </tbody> </table> </td> <td>(단위: 점)</td></tr> <tr> <th colspan="2">(평가내용) 총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2.3점으로 담당직원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권고됨</th><th></th></tr> <tr> <th colspan="2">나. 지표별 세부평가결과</th><th></th></tr> <tr> <th colspan="2">○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 100점</th><th></th></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고객 인권 등 권리 보호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악성민원 등의 감정노동 등 권리 보호는 소아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제도적 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td><td></td></tr> <tr> <th colspan="2">○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100점</th><th></th></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고객 인권 등 권리 보호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악성민원 등의 감정노동 등 권리 보호는 </td><td></td></tr> </tbody> </table>	【결과 그래프】	【점수표】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td> <td>92.3</td> </tr> <tr> <td>주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td> <td>92.3</td> </tr> <tr> <td>총점</td> <td>92.3</td> </tr> </tbody> </table>	분야	점수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92.3	주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92.3	총점	92.3	(단위: 점)	(평가내용) 총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2.3점으로 담당직원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권고됨			나. 지표별 세부평가결과			○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고객 인권 등 권리 보호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악성민원 등의 감정노동 등 권리 보호는 소아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제도적 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고객 인권 등 권리 보호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악성민원 등의 감정노동 등 권리 보호는 					
【결과 그래프】	【점수표】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td> <td>92.3</td> </tr> <tr> <td>주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td> <td>92.3</td> </tr> <tr> <td>총점</td> <td>92.3</td> </tr> </tbody> </table>	분야	점수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92.3	주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92.3	총점	92.3	(단위: 점)																								
분야	점수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92.3																																	
주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92.3																																	
총점	92.3																																	
(평가내용) 총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2.3점으로 담당직원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권고됨																																		
나. 지표별 세부평가결과																																		
○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고객 인권 등 권리 보호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악성민원 등의 감정노동 등 권리 보호는 소아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제도적 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고객 인권 등 권리 보호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악성민원 등의 감정노동 등 권리 보호는 																																		

이행과제

③ 단계 -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리스크 분석 및 검토(우선순위 부여) 방지 조치 수립
- 성과평가 방법, 평가지표 등 논의

인권리스크 분석 및 논의													
<p>III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p> <p>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가. 총평</p> <p>(평가표지) </p> <p>○ (평가내용)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1.91점으로, 고용상의 비차별, 고액 사생활 보호가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확인됨</p> <p>나. 지표별 세부평가결과 ○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 83.33점</p> <p>(성과표지) </p> <p>분야 점수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83.33 고용상의 비차별 100 질서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96.67 제3자 동의 권리 94.44 사람존중 보호 93.75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5 고액 사생활 보호 100 총점 91.91</p> <p>○ (평가내용)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1.91점으로, 고용상의 비차별, 고액 사생활 보호가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확인됨</p> <p>나. 지표별 세부평가결과 ○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 83.33점</p> <p>(성과표지) </p> <p>분야 점수 인권존중 정책선행 91.66 인권영향평가 청기적 실시 75 인권경영 체계구성을 위한 필요조치 100 인권 경영 성과 50 구체적화 마련 100 총점 83.33</p>	<p>-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금년도부터 시작하여 인권존중 정책선행, 인권영향평가 청기적 실시 및 인권 경영 성과부분 다소 미흡 - 인권경영 체계화를 위한 필요조치는 적정하게 운영됨 -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대외적으로 전단반응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자체평가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화의 마련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p> <p>○ 고용상의 비차별 : 100점</p> <p>(성과표지) </p> <p>분야 점수 고용상 비차별 100 고용상 날마다비차별 100 비정직 근로자 비차별 100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00 총점 100</p> <p>- 진흥원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직원체육공모문, 일자원 복지제도, 인사·보수규정 등 확인결과 고용상의 남녀 차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계약직관리 규칙을 통해 계약직의 운영시 근로계약, 보수의 구성 및 지급시기, 수당, 근무형태와 정규직과 차별없이 운영하며, 정규직과 계약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근로계약, 보수체계, 수당, 근무제가 동일 적용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외국인은 주재국 관계법령에 따라 근무를 원칙하고 있음</p> <p>IV 인권영향평가 점수산출 방법</p> <p>○ 점수산출 방법</p> <p>- 평가점수 : 분야별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분야별 점수 :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frac{\text{해당항목 지표점수}}{\text{해당항목지표수}} \times 100$</p>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예</th><th>보완필요</th><th>아니오</th><th>경보없음</th><th>해당없음</th></tr></thead><tbody><tr><td>점 수</td><td>2점</td><td>1점</td><td>0점</td><td>평가제외</td><td>평가제외</td></tr></tbody></table> <p>V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p> <p>○ 인권경영체계 구축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해외사무소 현지직원 제휴서 주재국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내부규정 또는 규칙 마련이 필요함 ○ 계약직에 모든 계약서에 공급업체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인권 존중 실천에 대한 내용을 서약서에 포함 ○ 사업 추진시 담당직원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수단 마련이 필요함</p>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경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경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인권경영 사업 실행 이후)

- 인권경영 추진과정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개(공시) : 홈페이지 등

○ 인권경영 실행 및 개선과제 도출

번호	개선과제	추진계획	담당부서
1	- 외국인근로자 비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류 개선	
2	-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마련	- 노동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정식 회의실 마련	
3	- 청사시설 관리 운영 규칙 개선	- 청사시설 관리 운영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	
4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방안 마련	- 인권보호의무 이행서약서 마련하여 준수 요구	
5	- 담당직원 인권보호의 제도적인 수단 마련	- 감정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 적극적인 업무처리에서 발생된 잘못에 대한 구제 제도 마련	경영기획팀

이행과제

④ 단계 - 구제절차 제공

○ 구제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켜주는 절차

○ 구제절차 수립

- 청렴, 갑질, 성평등 업무 등과 연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권익위원회, 갑질신고센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등의 기능을 종합 검토하여 독립성 있는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해 보호

○ 구제절차 시행

- 익명성 철저히 보장하여 시행
- 온·오프라인 신고채널 등 다양한 방식의 접수채널 마련하여 접근성 확대

III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인권경영 운영 지침

인권경영 운영 지침

2019.12.1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 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진흥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진흥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 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진홍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진홍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진홍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현장) 진홍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현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현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전담조직) ①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둔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진홍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4인 및 외부위원 3~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한다.

1. 경영전략실장
2. 인권경영 담당 팀장
3. 진홍원 노조 지부장
4.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5. 인권분야 전문가
6. 인권단체 활동가
7. 협력사 관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위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 운영수당 운영지침을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진흥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2019. 12. 1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V 인권경영 현장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인권경영 현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현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020년 12월 14일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